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53
----------	------

2021년 7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강동길 의원 외 18명
- 나. 제안일 : 2021년 5월 27일
- 다. 회부일 : 2021년 6월 1일
- 라. 상정일 :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2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강동길의원)

가. 제안이유

-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예비 범죄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가부에 '가출'이라는 표현을 '가정 밖'으로 변경을 권고함.

- 이에 따라 용어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지 약 4년만에 여가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함.
-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을 향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용어 사용을 재정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청소년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명시함(안 제 1조부터 제6조제1항,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1.6.4. ~ 6.1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개정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개정한 법률(「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음(안 제명, 안제1조~제6조 제1항, 안 제8조, 안 제9조).
- 본 개정안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편견 등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서울시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본 개정안의 용어 변경

· 가출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

- ▶ 제명,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4호,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본문,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 제8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9조

· 청소년의 가출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 ▶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본문,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

· 가출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 ▶ 제6조제1항제1호

- 본 조례는 ‘가출’이라는 용어를 제명을 포함하여 총 26회 사용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의 가출’과 ‘가출’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의 이유 및 경위

-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모든 가출 청소년들을 비행청소년 또는 예비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어,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 가출청소년은 비행을 위한 행위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가출도 있는바, 가출을 초래한 불가피한 상황(가족 간 불화, 폭력, 학대 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사유로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게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2017년 1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권고를 받아드리지 않았으며, 권고 후 4년 만에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개정되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 개선 권고, 2017.1.2.

※ 용어변경 관련 국회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발의 및 처리 현황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 : 2021.02.26, 의결일 : 2021.02.26. (원안가결)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

-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 2020.10.16, 의결일 : 2021.02.26. (대안반영폐기)
- 김정재의원 등 12인, 제안일 : 2020.12.11, 의결일 : 2021.03.24 (대안반영폐기)
- 권미혁의원 등 27인, 제안일 : 2017.03.17, 의결일 : 2020.05.29. (임기만료폐기)
- 유은혜의원 등 15인, 제안일 : 2017.08.07, 의결일 : 2020.05.29. (임기만료폐기)

다. 개정의 필요성 검토

1) 개정안의 핵심

- 본 개정안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핵심은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목적을 ‘귀가’에서 ‘안전한 환경과 분리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로 변경’하고, 그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2) 가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우리 사회는 가출 청소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용어 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정책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닌 초기 대응 방식을 다분화하는 것으로 현장에 적용되었으며, 귀가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은 변경없이 수립·추진해 왔음.

3)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변화 필요

- 폭주족, 성매매 등 자극적인 내용을 위주로 언론이 일부 청소년의 비행을 확대 재생산하였고, 그 결과 우리사회는 모든 가정 밖 청소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음.
 - 이러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도 기피의 대상이 되었고, 청소년은 ‘귀가조치’를 두려워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으로 편입을 거부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가정 밖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더라도 경찰신고를 거부하는 이유는 청소년 복지 관련 법령이 모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대응을 가정복귀로 규정하고 있어 그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보호가 아닌 귀가조치라는 일률적인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귀가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은 가출사유별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있는 가출(자유로운 생활, 일탈 등은 제외, 학대, 가족갈등, 빈곤, 폭력, 성폭력 등)’ 후 생활고로 인한 범죄 피의자가 되거나, 노동시장의 부당대우 등과 같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쉼터 유형별 가출원인 〉

구분	일시이동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생존형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한 가출)	8.7%	33.0%	36.4%	40.1%
시위형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	15.2%	8.2%	11.8%	8.0%
방랑형 (자유로운 거리생활 위함)	41.5%	11.1%	10.2%	5.8%
유희형 (친구들과 놀기 위해 가출)	22.7%	8.9%	4.8%	5.5%
방임형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음)	7.0%	16.7%	12.8%	20.9%
시설형 (보육, 양육시설에서 생활)	3.9%	10.7%	8.3%	12.1%
기타	1.0%	11.4%	15.7%	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2019

〈 귀가하기 어려운 사유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봐	35.3%	36.5%	37.2%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	23.7%	18.0%	20.0%
갈 집이 없음	7.2%	11.5%	16.8%
학교의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서	4.2%	0.4%	0.0%
돈을 벌수 있어서	5.1%	4.8%	2.2%
가출한 상태가 편안하고 자유스러워서	10.1%	15.9%	8.8%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	11.1%	8.8%	8.1%
기타	3.3%	4.1%	6.9%
합계	100.0%	100.0%	100.0%

출처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2019

- 본 개정안은 귀가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을 지양하고, ‘가정 밖’이라는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초점을 두어 ‘가출’을 ‘가정 밖’으로의 용어 변경은 가정 밖 청소년의 효과적 지원과 다양한 보호 정책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다. 부칙

- 본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개정(2021.02.26.) 및 공포(2021.3.23.) 되었으나, 2021년 9월 24일에 시행될 예정인바, 본 개정안의 시행도 법령의 시행일에 맞출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7973호, 2021.3.23., 일부개정]

- 의결일 : 2021.2.26.
- 공포일 : 2021.3.23.(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2021.9.24.

라. 다른 조례의 개정

○ 본 조례 이외에 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3개의 조례가 있는바, 통일적 정책 수행을 위해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변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가출은 청소년이 아닌 아동의 가출을 규정하는 경우(2개 조례)와 청소년 중 10대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다른 조례에 본 개정 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십대여성"이란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2.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한다.

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십대여성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 「서울특별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마. 부수적 검토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의 대안 마련 필요

-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와 귀가 외에는 주거 대안이 없고, 아동시설 보호종료 청소년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귀소할 곳이 없다'라는 전제로 인해 주거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시립청소년쉼터도 입소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 가정 밖 청소년이 귀가를 거부할 사유가 합리적일 경우, 주거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쉼터의 확대 또는 일시보호와 중장기 보호기능을 분리하여 중장기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안정적 주거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5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 강동길, 권수정, 김인호,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박기재, 박상구, 서윤기,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9명)

1. 제안이유

-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가부에 ‘가출’이라는 표현을 ‘가정 밖’으로 변경을 권고함.
- 이에 따라 용어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지 약 4년만에 여가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함
-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국자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을 향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용어 사용을 재정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청소년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제6조제1항,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으로 한다.

제4조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가출청소년”을 각각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 가출”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으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출”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가출청소년”을 각각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소년 가출”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으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5호 중 “가출청소년”을 각각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9조 중 “청소년의 가출”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으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따라 <u>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u>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가출청소년</u>"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p>	<p>2. "<u>가정 밖 청소년</u>"-----</p>
<p>3. (생 략)</p>	<p>3. (현행과 같음)</p>
<p>4. "<u>청소년쉼터</u>"란 <u>가출청소년</u>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p>	<p>4. ----- <u>가정 밖 청소년</u>-----</p>

현행	개정안
<p>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 ----- -----.</p>
<p>5. 6. (생략)</p>	<p>5. 6.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u> -----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u></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가정 밖 청소년</u>----- ----- -----.</p>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u>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 <u>가정 밖 청소년</u>----- ----- -----.</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u></p>	<p>2. <u>가정 밖 청소년</u>----- -----</p>

현행	개정안
<p>3.·4.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u>가출청소년</u>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u>청소년</u> <u>가출</u> 예방 및 <u>가출청소년</u>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가출</u>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u>가출청소년</u>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u>가출청소년</u>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u>가출청소년</u>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u>가출청소년</u>의 보호 6. <u>가출청소년</u>의 교육문화·복지 지원 7. <u>가출청소년</u> 야간생활지도 지원 	<p>3.·4. (현행과 같음)</p> <p>③ ----- ----- <u>가정 밖 청소년</u> ----- ----- ----- ----- -----.</p> <p>제6조(지원사업) ① ----- <u>가정 밖</u> <u>청소년의 발생</u> ----- <u>가정 밖</u> <u>청소년의</u>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가정 밖 청소년 발생</u> ----- ----- 2. <u>가정 밖 청소년</u>----- ----- 3. <u>가정 밖 청소년</u> ----- ----- 4. <u>가정 밖 청소년</u>----- ----- 5. <u>가정 밖 청소년</u>----- 6. <u>가정 밖 청소년</u>----- ----- 7. <u>가정 밖 청소년</u> -----

현행	개정안
<p>8. (생략)</p> <p>9. 그 밖에 <u>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생략)</p> <p>제8조(청소년거점센터 설치·운영)</p> <p>① (생략)</p> <p>②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u>가출청소년</u>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p> <p>2. ~ 4. (생략)</p> <p>5. <u>가출청소년</u>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적 건의</p> <p>6. (생략)</p> <p>③ (생략)</p> <p>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u>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u>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p>8. (현행과 같음)</p> <p>9. ---<u>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u>--- ---<u>가정 밖 청소년</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청소년거점센터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가정 밖 청소년</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가정 밖 청소년</u>----- -----</p> <p>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 <u>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u> ----- ----- <u>가정 밖 청소년</u> ----- ----- -----.</p>